

國際貿易去來에서의 信用狀去來 詐欺事件의 對處方案

How to deal with Fraud Cases in L/C-based Transactions in
International trade business

南 善 模*
Seon-Mo Nam

〈목 차〉

- I. 序 論
- II. 信用狀의 法的 性質
- III. Fraud Rule의 判斷基準
- IV. 詐欺의 類型
- V. 對處方案

주제어 : 信用狀, 信用狀統一規則, 獨立抽象性, 詐欺原則, 禁止命令, 偽造·變造

* 세명대학교 법학과 교수

I. 序 論

信用狀去來에 의한 詐欺(fraud)란 신용장 혹은 신용장과 관련한 부수적인 證據書類를 偽造 혹은 變造하여 사용한 경우를 말한다.¹⁾ 그 동안 신용장거래는 국제무역거래에서 오랫동안 獨立된 관행으로 당사자 간의 물품인수와 인도 등 국제무역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이는 신용장통일규칙에 근거하여 명문으로 수용된 기본원칙이라 할 수 있다. 신용장은 매매계약에 근거를 두고 개설되지만 신용장거래는 매매계약 및 상품 자체와는 무관하다.²⁾

따라서 은행은 신용장 개설신청서만을 기준으로 하여 신용장을 개설하고 선적서류 매입 시에도 신용장의 조건만을 보고 선적서류를 매입한다. 상품에 대한 지식은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얻어지는 것이므로 은행으로서 신용장거래와 상품거래를 분리시킬 필요가 있다. 본질적으로 신용장은 매매계약과는 독립된 서류상의 거래로 신용장의 諸條件과 일치하는 한 은행은 이에 支給義務를 부담하여야 한다. 기존의 信用狀去來는 獨立·抽象性의 原則을 惡用, 서류 등을 偽造·變造하여 신용장조건에 부합되는 서류 자체만을 구비하여 은행에 제시함으로써 은행을 欺罔하여 신용장대금을 騙取하는 등 詐欺의 문제가 대두되었다.³⁾

신용장대금을 편취하는 사례로는 매매목적물을 선적하지 않고 선박회사와 공모하여 허위의 선적서류를 발급받는 방법 또는 관계서류를 모두 偽造하는 방법 등이다.⁴⁾ 이와 같은 경우에는 신용장대금의 지급을 제한하여야 할 것이다.⁵⁾ 그러나 추상성의 예외를 인정할 근거와 구체적인 기준이 없는 것이 문제이다. 신용장통일규칙은 이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판례상 信義則이나 權利濫用의 法理를 근거로 適用例外를 인정하고 있을 뿐이다. 이런 연유로 신용장통일규칙 적용원칙에 따른 신용장거래와 신용장사기 원칙 등의 분야에서는 제한적으로 연구가 있어 왔다. 그러나 국제 신용장거래에서 실제 당사자 간 체결과정에서 행해지는 사기의 유형을 중심으로 한 연구과제는 희소하다. 이를 감안, 본 연구에서는 구체적인 신용장거래 사기유형을 중심으로 그 대처방안에 중점을 두었으며 특히 이를 보완하고자 판례를 원용하여 연구의 질을 높이는

1) 대판 1991.1.29. 90도 2542, 한국 형법에서는 有形偽造를 偽造라 하고 작성권한자가 허위내용의 문서를 위조하는 無形偽造는 作成으로 표현하고 있다.

2) 신용장통일규칙 제3조·제4조·제5조 참조. 제5조에서는 “과도한 명세를 삽입하려는 시도의 억제 규정”으로 이는 信用狀去來의 獨立·抽象性의 原則(principles of independence and abstraction)을 밝히고 있다.

3) 대판 2000.6.13. 2000도 778, 偽造는 間接正犯의 방법으로도 가능하다. 名義人을 欺罔하여 문서를 작성케하는 경우는 書名·捺印이 정당히 성립된 경우에도 서명날인자의 의사에 반하는 문서를 작성케하는 것으로 위조가 된다.

4) 대판 1998.4.10. 98도164, 偽造의 정도는 명의자가 작성한 문서로 볼 수 있을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어 일반인이 그 명의자의 사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면 족하다.

5) 대판 1993. 12. 24, 93다 15632 참조.

데 노력하였다. 나아가 전자신용장의 적용에 따라 신용장거래의 사기가 완전히 대체되었다고 볼 수만은 없으며 구성요건에 따른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다. 신용장 사기의 구성요건으로 신용장사기는 요구서류가 위조되어 있거나 중요한 사기가 존재하여야 함과 동시에 입증 가능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⁶⁾ 따라서 사기를 주장하는 자는 해당 사기에 대한 立證責任이 있으며, 은행 또한 認知하여야 한다. 발행의뢰인이 신용장 거래에 사기가 있다는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구성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이다. 이는 신용장의 법적 성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II. 信用狀의 法的 性質

1. 信用狀統一規則의 適用

信用狀去來는 法律에 근거하기에 앞서 去來慣習에서 由來되고 있다. 이러한 신용장의 특수성을 확인하고 법적효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신용장거래 관행의 변화와 학설과 판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신용장거래는 매매계약과도 무관하고 상품 자체와도 무관하다.⁷⁾ 그러므로 은행은 제출된 서류의 문면에 대한 심사, 즉 형식상의 심사만 하면 충분하다.⁸⁾ 따라서 은행은 선적서류를 매입하거나 선적서류를 인도하는 경우 사실이 서류의 내용에 부합하는가의 여부는 심사하지 않으며 제시된 서류가 신용장조건을 충족하기만 하면 대금을 지급한다. 반면, 서류에 瑕疵가 있으면 은행은 신용장 대금의 지급을 거절하여야 하고, 만약 은행이 지급하였다면 신용장개설의뢰인은 그 상환을 거절할 수 있다.⁹⁾ 특히 관계서류가 문서로서 형식상의 정규성과 상태성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급을 거절하여야 한다.¹⁰⁾ 그리고 서류심사에서는 ‘嚴格一致의 원칙’ (doctrine of strict compliance)이 적용된다. 상품이 아무리 계약내용과 일치하더라도 제시된 서류가 文面上 信用狀條件과 엄밀히 일치하지 않으면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따라서 은행은 모든 서류의 형식이나 진정성, 위조 또는 법률적 효력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¹¹⁾

6) 대판 2004.4.9. 2003도 7828, 한국형법에서의 詐欺罪는 타인을 欺罔하여 그로 인한 瑕疵있는 意思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犯罪로, 그 본질은 欺罔行爲에 의한 재산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는 것이고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의 발생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재산상 손해의 발생 요건에 대해서 判例는 不要說의 입장에 있다.

7) 1993년의 제5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 제4조에는 “신용장거래에 있어서 모든 관계당사자는 서류상의 거래를 행하는 것이지 그러한 서류가 관계될 수도 있는 상품, 용역 또는 기타 의무이행상의 거래를 행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규정하여 “신용장거래는 서류에 의한 거래”로 이를 명시하고 있다.

8) 대판 1997. 8. 29. 선고, 96 다 37879 참조.

9) 대판 2002. 2. 21. 선고, 99 다 49750 참조.

10) 대판 2002. 5. 28. 선고, 2000 다 50299 참조.

2. 既存 信用狀制度的 限界

기존의 화환신용장이 무역거래에서의 결제수단으로 널리 이용되어 왔지만 무역업자를 중심으로 그 동안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무역대금의 결제방식은 2000년을 전후하여, 신용장방식은 감소하고 있는데 반해 송금방식은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 왔다.¹²⁾

이를 분석해 보면 대부분 거래상의 불편이나 복잡한 과정을 거치기 때문이다. 화환신용장의 경우 수익자가 개설은행에 대금지급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신용장에 지정되어 있는 서류를 구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은행은 매매계약조건과는 별개로 신용장 조건에 엄밀히 일치하는지 서류만을 근거(on the basis of documents alone)로 하여 심사하고 지급여부를 결정한다. 따라서 은행은 독립·추상성에 의해 매매계약과 관계없이 서류만을 근거로 심사하여 지급하기 때문에 書類의 偽造·變造(fraudulent or false)나 詐欺같은 악용사례가 문제점으로 대두되기도 한다.

이는 최근 위조를 용이하게 하는 기술 즉 정교한 형태의 복사기(photocopying machine)의 발명 등과 같은 기술의 발전(technological developments)에 기인하기도 한다.¹³⁾ 이러한 정교한 기술을 이용한 수익자 측의 사기행위에 대하여 서류 자체만을 취급하는 은행으로서 쉽게 이를 발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서류의 위조여부나 서류에 표시된 상품의 실질 상태에 따라 은행은 면책받기 때문에 일단 신용장조건에 일치되는 서류가 제시되면, 은행은 이에 대하여 대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다.

나아가 신용장은 그 독립·추상성이라는 성질에 의하여 신용장 자신을 전자적 환경에 쉽사리 적용하지 못하게 한다. 신용장거래에서 제시된 서류들 중 70% 가량이 불일치조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매도인이 지급을 받지 못하며 그러한 불일치를 해결함에 있어서 추가적인 지연과 비용을惹起시킨다.¹⁴⁾ 또한 보증신용장은 현지금융의 수단으로서 해외지점의 채무보증을 위하여 채권자인 현지은행 앞으로 본사의 거래은행이 개설한다. 만약 현

11) 대판 1980. 1. 15. 선고, 78 다 1015 참조, 은행 등 관계당사자는 관계서류가 신용장조건과 문면상 일치하는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할 의무가 있을 뿐이고, 그 밖의 서류의 형식, 충분성, 진정성, 위조여부 또는 법률 효력이나 서류상에 표시된 물품의 수량, 품질 등에 관한 실질적 조사의무와 책임은 없으므로 신용장의 조건이 되어 있는 부대서류의 하나인 물품수령증이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된 無權限者인 갑에 의하여 허위작성된 것이라 할지라도, 이로써 필요한 서류조사 의무를 다한 것이 되고, 위 서류가 정규성·상태성 없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고 또 은행이 작성명인의 대표자 자격 등에 나아가 실질적 조사를 하지 아니한 것이 잘못이라 할 수 없다. 同旨, 신용장통일규칙 제15조 참조.

12) 신용장 결제방식은 1997년 중 총수출의 43.1%를 차지하였고 2000년에는 30% 이하로 하락하였으며 송금 결제방식은 1997년중 29.3%를 차지하였고 2000년에는 42.6%로 증가하였다. 이는 무역결제방식이 전반적으로 신용장방식의 하락과 송금방식의 증가로 변화되었다고 요약해 볼 수 있다. 무역결제방식의 구체적 변화에 관해서는 신승관, 무역결제방식 변화요인에 관한 연구, 무역학회지 제26권 제3호 참조.

13) 대판 1989.9.12. 87도 506 참조, 1995년 개정형법에서는 제237조의 2에서 “전자복사기, 모사전송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기를 사용하여 복사한 문서 또는 도화의 사본도 문서 또는 도화로 본다.”라고 규정하여 이를 입법적으로 해결한 바 있다.

14) 朴錫在, 사이버 貿易時代의 新決濟方式에 관한 研究, 貿易商務研究 제14권, 2000. 8, p. 238 이하.

지의 해외지점이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면 현지은행이 신용장 개설은행 앞으로 어음을 발행하여 구상한다. 보증신용장은 보증계약 내지 손해담보계약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¹⁵⁾

3. 信用狀去來 慣行의 變化

偽造書類가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위조에 관여하지 않은 은행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이 신용장거래의 관행이다. 즉, 수출상이 위조서류를 만들어 수출국의 은행에 네고¹⁶⁾를 하여 대금을 편취하고 수출국 은행이 수입국의 발행은행으로 지급을 청구한 경우 발행은행은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수입상은 발행은행에 대금을 상환하여야 하고 결국 손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업무형태의 변화로는 기존의 종이서류(paper documents) 방식을 지양하고 표준화된 전자문서(electronic documents)에 의하여 업무가 처리됨으로써 오류와 낭비를 감소시키게 되었다. 이에 따라 신용장의 거래 관습도 표준화 된 포맷(format)과 통신문에 의한 이용으로 변화되고 있다.

신용장 거래는 SWIFT(Society for Worldwide Inter-bank Financial Telecommunication : 세계은행간 금융전자통신기구)¹⁷⁾ 형태로 이용되고 있으며, 또한 EDI 시스템에 의한 신용장 발행 신청 및 신용장 통지도 점차 확산되는 등 이른바 종이 없는 무역거래에 많이 접근되고 있는 추세이다. 전자서류의 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선적서류의 DB화 구현이 시급한 부분이며 통합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¹⁸⁾ 그리고 온라인상에서의 무역거래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정부·기업의 정보를 수집하는 등 전자무역의 전형적인 형태를 취

15) 보증신용장은 1983년 신용장통일규칙 개정시에 처음 동규칙의 적용대상이 되었다. 보증신용장의 경우에는 보증은행의 독자적인 채무를 부담하며 개설은행과 개설의뢰인 사이의 법률관계의 특성상 사법상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이 폭 넓게 적용된다고 한 사례로 대판 2004. 9. 24. 선고, 2001 다 69771 참조.

16) 무역대금결제에서 사용되는 경우 수출환어음의 매입(negotiation, nego)이란 수출상이 신용장 또는 D/P·D/A 조건에 따라 선적을 완료하고 발행한 환어음 및 서류를 수출거래은행이 할인(discount) 하는 것을 말한다. 수출상은 契約物을 선적함과 동시에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준비하여야 하는데 신용장자체가 무조건 대금지급을 약속하는 것이 아니고 은행의 條件附支給確約이므로 신용장조건에 충족하도록 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손태우 외, 국제거래법 용어통일대사전, 도서출판 대명, 2007, p.432.

17) SWIFT는 국제적으로 2,500개 이상의 은행이 가입하고 있고 벨기에에 본부를 둔 국제민간협력연합이다. 우리나라는 1992년부터 SWIFT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부분의 외국환은행들이 전송방식에 의한 신용장 통지를 행하고 있다.

18) 전자기록의 진정성 認證(authentication)을 위해서는 인증될 수 없는 전자기록은 제시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전자기록을 제시할 경우에는 적당한 방법으로 인증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전자기록의 인증방법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 UCP에서 기존 문서의 방법은 서면상의 표시(written representations)에 의존하여야 하므로 서류가 인증되기 위해서는 서명(signature), 표지(mark), 스탬프(stamp), 또는 부전(label)에 의하여 충족시켜야 한다. 전자적 제시에 있어서의 인증은 종이문서와 달리 전자적 제시자 또는 송신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폐쇄형 네트워크에서는 사용자 이름(user name)과 패스워드(password)를 이용하지만, 개방형 네트워크에서는 제3자를 개입시킴으로써 본인의 진정성을 확인(certification)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를 인증이라 한다.

하고 있다. 권유장(Circular Letter)과 조회장(Inquiry Letter)의 발송과 회신은 물론 청약과 승낙을 포함한 거래의 협상에 있어서도 전자메일이나 전자문서 교환방식을 이용하여 신속하고 간편하게 이루어지게 된다. 이처럼 신용장거래 慣行은 변화하였지만 여전히 詐欺의 문제는 남아 있다. 또한 사기의 기준이 각 법원마다 다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를 사기로 규정하는가는 지급거절과 직결되기 때문에 중요하다. 詐欺의 適用範圍와 관련하여 그 판단기준으로 *stzejn* 사건 이후 미통일상법전(Uniform Commercial Code : UCC)에서 사기 원칙을 규정하면서 事實問題(question of facts)로 적용하고 있다. 여기서는 학설과 판례를 중심으로 그 판단기준을 살펴보고자 한다.

Ⅲ. Fraud Rule의 判斷基準

신용장거래에서 詐欺의 사실이 명백한 경우 獨立·抽象性의 예외로 인정되어 은행은 이를 근거로 지급거절을 할 수 있는데 이를 詐欺 例外(fraud exception) 또는 詐欺 原則(fraud rule)이라 한다.¹⁹⁾ 신용장거래에서 제시된 서류가 실제 선적품과 관련하여 진정성이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 근거가 되는 매매거래에 사기가 존재한다면 이는 독립·추상성의 예외에 의한 사기의 원칙이 적용된다는 것이다.²⁰⁾ 미국의 경우 루이지애나주를 제외한 모든 주는 詐欺防止法을 두고 있다. 특히 신용장관련법 UCC Art. 5-114(2)(b)에서는 “신용장거래의 대고객 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하여 발행은행은 고객으로부터 서류의 문면상 명백히 나타나 있지 않으나 사기, 위조 또는 기타 하자가 있음을 통고하여 왔음에도 어음 또는 지급요구를 인수할 수도 있으나 법원은 이의 인수를 금지할 수도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²¹⁾ 미국의 법률적 관점은 은행은 서류의 심사에서 신중을 기하여야 하며 만일 은행이 사기의 위험을 간과하여 지급을 이행하였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실을 표명하고 있는 것이다.²²⁾ 아래에서는 우선 학설과 판례를 통해 형성된 내용을 중심으로 Fraud Rule의 판단기준을 제시하였다.

19) 뉴욕법원은 사기의 원칙과 관련하여 “신용장은 그 근거가 되는 매매계약과는 관련이 없는 별도의 거래라는 독립·추상성의 원칙을 파렴치한 매도인에게 까지 확대하여 적용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Szzejn* 규칙을 창출하였다. *Szzejn v. Henry Schroder Banking Corporation*, 31 N.Y.S. 2d 631 (Sup. Ct. 1941)

20) Michael Rowe, *Letter of Credit*, Euromoney, 1985, pp. 149-150.

21) UCC Article 5-114(b) : “in all other cases as against its customer, an issuer acting in good faith may honour the draft of demand for payment despite notification from the customer of fraud, forgery or other defect not apparent on the face of the documents but a court of appropriate jurisdiction may enjoin such honor.”

22) 영국의 경우 사기와 위증을 방지하기 위하여 1677년에 詐欺防止法(Statute of Frauds)이 제정되어 일정한 계약은 문서화 되어 있지 않으면 계약으로서 法的 強制力이 인정되지 않는다(unenforceable). 詐欺防止法은 1954년에 改正되었으나 보증계약 및 토지에 관한 계약은 현재에도 書面으로 계약서의 작성의무를 규정하고 한다.

1. 學說의 檢討

英·美法에서는 신용장의 법적 성질을 규명함에 있어서 은행과 賣渡人(수익자)과의 법률 관계를 중요하게 취급하고 신용장개설의뢰인과 개설은행과의 관계에 대하여는 契約法의 일반이론으로 해결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大陸法系에서는 신용장개설의뢰인과 개설은행과의 관계 및 개설은행과 수익자의 관계 등에 대해 동일한 관점에서 동시에 논의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서는 주로 英·美法上 學說을 중심으로 검토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契約理論(contract theory)

신용장은 발행은행과 수출업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발행된 것이며 발행은행은 신용장 발행과 동시에 계약상의 의무로서 수입업자와는 별도로 수출업자에 대하여 어음의 지급과 인수 의무가 있다는 이론이다. 특히 신용장의 개설을 契約의 請約으로 보지 않고 계약 그 자체에 의한 의무를 표시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르면 발행은행이 수입업자와 신용장 계약을 하지 않고 수출업자와 직접 신용장 계약을 허용하는 이론으로 계약이론의 한계이다. 여기엔 輸出商을 위하여 하는 개설은행과 輸入商간의 雙務契約說(bilateral contract between the bank and the buyer for the benefit of the seller), 개설은행과 수입상간의 쌍무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입상의 권리가 계약성립과 동시에 수출상에게 이전된다는 契約移轉說(bilateral contract between the bank and the buyer with a simultaneous assignment thereof to the seller), 更改說(the innovation theory)등으로 나뉘볼 수 있다. 更改說의 경우 輸入商은 계약의 당사자 지위에서 벗어나게 되는데 이는 당사자의 意思에 반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雙務契約說의 입장에서 보면 信用狀契約에서는 約因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UCC의 規定을 합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2) 契約의 請約理論(the offer and acceptance theory)

신용장의 개설은 輸出商에 대한 개설은행의 계약의 請約(offer)으로 보며 수출상은 어음과 船荷證券 등의 운송서류를 개설은행에 제공함으로써 계약을 承諾(acceptance)한다는 것이다. 이는 신용장의 발행은 수익자에 대한 발행은행의 계약신청인 동시에 수출업자인 수익자가 어음 및 선적서류를 제공함으로써 청약을 승낙한다는 의사를 표시한다는 학설로 청약인수이론이라고도 하며 편무계약(unilateral contract)의 청약설과 쌍무계약(bilateral contract)의 청약설로 나누어진다. 원래 신용장은 발행은행이 수출업자인 수익자에게 단순히 계약을 신청하는 것에 불과하다. 이에 따르면 수출업자가 선적서류를 제시하여 승낙할 때까지의 기간 중에는 언제라도 그 신청을 철회하여 신용장을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取消不能信用狀의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는 이론으로 取消不能性을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3) 保證理論(the guarantee theory)

이 설은 信用狀이란 개설은행이 수입상의 상품대금 지급을 수출상에 대하여 보증하는 계약에 불과하여 개설은행은 主債務者가 아니고 소위 保證人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다. 이것은 발행은행이 발행의뢰인의 물품대금지급을 수익자에게 조건부로 보증하는 것으로 매 수입채무보증이론이라고도 한다. 원래 보증(guaranty)은 채권자인 당사자가 채무자인 타방 당사자의 당해 계약상의 채무이행에 의문이 있을 때 이를 보강하기 위하여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로 하여금 일정한 요건의 충족을 전제로 채무이행을 대신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기능의 문서로는 보증신용장(stand-by L/C)과 지급보증서(letter of guaranty)가 있다. 그런데 신용장에서 발행은행의 채무는 매매계약과는 별개의 독립된 채무이다. 그리고 신용장을 발행은행이 매수인의 지급이행여부와는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것으로 발행은행의 채무는 매매계약과 독립된 추상적 채무이다.

(4) 禁反言理論(the estoppel or trustee Theory)

金反言이란 본래 영미법상의 원칙으로서 기록(record), 날인(deed), 표시행위(representation) 및 침묵(silence)에 의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어느 특정 사실 상태를 신뢰하도록 하고 그 신뢰에 의하여 그 이전의 지위를 변경하는 결과를 가져오도록 하였다면 전자는 후자에게 다른 사실상태가 동시에 존재하였다고 주장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다. 이처럼 외관을 신뢰하여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근거가 '외관주의의 법리'이며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고 있다. 영미계약법에서의 금반언이란 어느 특정인이 자기의 언행을 고의로 타인으로 하여금 믿게 하고, 나중에 증전의 입장을 반복할 수 없다는 법률용어이다. 이를 신용장에 적용시킨 것으로 은행은 신용장 발행 후 수익자를 위한 자금이 위탁되어 있다는 사실을 표시한 것이기 때문에 은행은 신용장 발행 후 수익자를 위한 자금이 위탁되어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는 이론이다. 여기에서는 신용장의 발행을 위한 발행자금이 은행에 예탁되어야만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발행은행은 수입업자로부터 지급자금을 먼저 지급 받고 신용장을 발행하는 것은 아니며 실무에서는 오히려 후에 지급하는 것이 관례이다. 원칙적으로 발행은행 또는 확인은행 및 지정은행은 서류를 접수하고 통례적인 시간 내에 상당한 주의를 다해 서류의 일치성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한편 주어진 기간 내에 서류의 불일치사항에 대한 통지는 1회에 한하여 가능하며 2차, 3차 등의 순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불일치사항을 각각 거론, 지급거절을 할 수 없다. 이 경우 역시 1차 불일치사항을 거론하는 것으로 다른 불일치사항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간주되는 "침묵에 의한 금반언설"이 적용된다. 이에 대한 사례로는 指定銀行의 詐欺例外로 인한 地位에 관하여 인도의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있다. 만일 매입은행이 단순히 추심은행이거나 수익자의 대리인에 지나지 않는 경우 발행은행이 추심은행에

지급을 이행하기 이전에 지시된 서류가 변조되었거나 또는 사기성이 있음을 이유로, 발행의뢰인/수입업자이 지급정지를 요청하여왔다면, 추심은행은 발행은행에 추심대금지급을 이행하도록 강제할 수 없다. 그러나 지정은행이 발행은행으로부터 서류의 진정성과 관련하여 수권된 청산을 근거로 상환을 요청하였다면, 그 은행은 “선의의 소지자(holder in due course)의 입지에 있음으로 이에 상환을 억제하려는 발행의뢰인/수입업자의 제소는 인정되지 않아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인도의 경우, 영국의 법리적 운영의 영향을 받아서 신용장거래에 있어서 미국의 유동적인 관점 보다는 영국의 전통적인 관점이 더욱 우세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특이할 법률적 관점은 발행은행의 불일치서류에 대한 지급 거절을 위한 통지를 통례적으로 허용되는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초점이 부각되었다. 이로 인하여 발행은행은 서류에 불일치사항이 존재하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沈黙에 의한 禁反言說”이 적용되어 불일치서류에 대한 지급 거절권을 상실하게 된 것이라 할 것이다.

(5) 代理人理論(the seller's agent theory)

신용장 개설의 중요한 이유는 수출상이 수입상의 代金支給能力을 믿을 수 없으므로 公信力있는 은행으로 하여금 수입상과는 독립하여 지급약속을 하게 하는 것이다. 이는 발행의뢰인이 수익자의 대리인 자격으로 발행은행과 신용장 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수익자는 발행은행에 서류를 인도하고 대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으로 매도인의 대리인이론이라고도 한다. 그러나 수입업자가 신용장을 발행의뢰 하는 행위는 제3의 은행의 확약을 요구할 때 선정된다. 따라서 확인은행은 수익자의 요청에 의거하여 발행은행이 지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매입 시 대금결제의 편의를 위하여 수익자의 요청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발행은행이 일방적으로 지명하기도 한다. 따라서 매입 후 매입은행은 신용장대금을 발행은행이나 확인은행 중 어느 한 곳을 선택하여 청구할 수 있으며 수익자나 매입은행으로부터 지급청구를 받은 확인은행은 발행은행의 파산이나 지급불능 등을 이유로 지급거절을 할 수 없다. 실무에서는 수출상과 수입상은 각자 독립된 지위의 역할이 있는 것이고, 만약 대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不法行爲에 대한 책임 문제로 부당한 결론이 도출될 수 있다.

2. 判例의 檢討

(1) 信用狀統一規則上的 適用(信用狀統一規則 제10조 제b항 제ii호)

아래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에 의한 이 사건 신용장 매입이 신용장통일규칙에 의한 매입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에 있으며 주요 판시사항, 판결요지, 이유(원심 판단의 요지), 소결을 도출하여 Fraud Rule의 판단기준을 검토하였다.

1) 主要 判示事項(대판 2003. 1. 24. 선고 2001다 68266)

① 은행의 신용장 매입이 수익자의 사기행위 등 적법한 것이 아닌 경우, 개설은행이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모든 사유로 매입은행에게 신용장 대금지급의 거절 등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② SWIFT 방식에 의하여 개설된 신용장에 대한 국제상업회의소 제정의 신용장통일규칙의 적용 여부(적극)

③ 대금의 지급이 특정 기일로 지정되어 있는 연지급신용장이 개설은행에 의하여 선적서류 매입의 방법으로 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정된 은행의 매입대상인지 여부(적극)

④ 제5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 제10조 b항 제ii호의 소정의 '매입'의 의미

⑤ 연지급신용장의 개설은행에 의하여 대금의 지급이나 선적서류 매입을 위한 은행의 지정이나 수권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한 사례

2) 判決要旨

① 신용장의 적법한 매입이 있는 후에 그와 같은 신용장 거래가 선적서류의 위조 등으로 인한 사기 거래로 밝혀진다고 하더라도, 그 매입은행은 그 신용장대금의 지급이나 매입 당시 그 은행 자신이 위조 등 사기행위의 당사자로서 관련이 되어 있거나 매입 당시 서류가 위조된 문서라는 등의 사기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또는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개설은행에 대하여 신용장대금의 상환을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만일 은행에 의한 신용장의 매입이 적법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그 대가를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신용장통일규칙상의 '매입'이 될 수 없는 것이고, 개설은행으로서는 그 신용장의 만기에 서류를 제시하는 위 은행에 대하여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모든 사유로 대항할 수 있고, 따라서 신용장 거래에 있어 수익자의 사기 행위가 밝혀진 경우 개설은행은 이를 이유로 신용장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② SWIFT(The Society for Worldwide Interbank Financial Telecommunication의 약칭) 방식에 의하여 개설된 신용장에는 개설 당시에 시행중인 신용장통일규칙이 적용되도록 되어 있으므로(SWIFT 사용편람 참조), 비록 신용장의 문면상에 국제상업회의소가 제정한 신용장통일규칙이 적용된다는 명문의 기재가 없다고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신용장에는 그 신용장이 개설될 당시 시행중인 신용장통일규칙이 적용된다.

③ 신용장 개설은행의 지정은행(확인은행도 마찬가지이다.)에 대한 수권 및 상환의무에 관한 신용장통일규칙 제10조 a항, b항 제 i 호, c항, d항, 제14조 a항 각 규정 취지와, 신용장통일규칙상 지정은행에 의한 연지급신용장대금의 만기 전 지급이나 선적서류 매입을 금하는 취지의 규정이 없는 점, 국제적 거래에서 신용장이라는 독립적이고 추상적인 결제 수단을 사용하는 기본적 취지가 수익자의 대금결제에 대한 불안을 제거하기 위한 것으로

그 독립추상성에서 발생하는 위험은 신용장의 개설의뢰인이 부담하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대금의 지급이 특정 기일로 지정되어 있는 연지급신용장의 경우에도, 개설은행에 의하여 선적서류 매입의 방법에 의하여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은행이 지정된 때에는, 특별한 반대의 약정이 없는 한 개설은행의 위 지정은행에 대한 수권 속에는 연지급신용장의 대금지급 만기 전에 지정은행이 선적서류를 매입하더라도 개설은행이 만기에 그 대금을 상환하겠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고(다만, 개설은행은 만기 전까지는 그 대금의 상환을 거절할 수 있을 것이다.), 연지급신용장의 개설에 환어음의 발행이 수반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선적서류 등과 함께 신용장을 매입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연지급신용장도 지정은행이 지정되어 있는 한 그 은행에 의한 매입의 대상이 될 수 있다.

3) 理由

원심이 제시한 증거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원심 판단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① 프랑스 법인인 살 잘텍스(SARL JALTEX, 이하 '잘텍스'라 한다)는 한국 법인인 소외 1 주식회사에게 23,000m의 직물을 주문하고, 판매대금 미화 81,650\$의 지불을 위하여 피고 은행 뒤편느 지점에 신용장 개설을 의뢰하였고, 피고 은행 뒤편느 지점의 의뢰에 따라 피고 은행 본점은 1997. 7. 7. 신용장번호: 097549/00823, 신용장금액: 미화 81,650\$, 신용장 개설신청인: 잘텍스, 수익자: 소외 1 주식회사, 신용장 유효기간과 서류제시장소: 1997. 8. 15. 파리, 지급만기일: 선적일로부터 90일로 하는 취소불능신용장(이하 '이 사건 신용장'이라 한다)을 개설하였다.

② 한편, 이 사건 신용장은 소위 연지급신용장(Deferred Payment Letter of Credit)으로서 환어음의 발행이 요구되지 않았고, 제41D항에 의하면, '개설은행의 청구에서 연지급방식에 의하여 가능하다(available with...at ours counters by DEF payment).'라고, 제78항에 의하면 '만기에 개설은행은 매입은행의 지시에 따라서 하자 없는 선적서류에 대한 신용장대금 중 97% ... 를 지급하겠다(At maturity, as per instructions of the negotiating bank, for 97 percent of value of documents in order only, ... will be paid by ourselves).'라고 기재되어 있다.

③ 그런데 소외 1 주식회사는 잘텍스와 계약한 이 사건 신용장상의 물품 내용과는 그 양과 질에서 매우 떨어지는 물품을 선적하고서도 선적서류를 위조하여 이 사건 신용장상 물품 내용과 동일한 물품을 선적한 것처럼 하여 원고에게 위 신용장상 서류의 매입을 요청하였고, 원고는 1997. 7. 25. 소외 1 주식회사로부터 위 서류를 매입하여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서류를 제시하고 인수를 요청하였는데, 피고는 1997. 8. 8. 원고에게 '... 위 선적

서류를 다음과 같이 인수하였다: 인수금액: 미화 79,150.50\$, 만기: 1997. 10. 23.(...has accepted above shipping documents as follows: Accepted amount: USD 79,150.50, Maturity date: Oct. 23, 1997)'와 같은 내용의 통보서를 발송하였다.

④ 그 후 잘텍스의 신청에 따라 파리상사재판소는 1997. 9. 17.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신용장대금의 지급금지지를 명하는 가처분명령을 내렸고, 잘텍스가 소외 1 주식회사와 피고 및 이 사건 거래를 중개한 소외 프랑스와 루비노익을 상대로 잘텍스가 이 사건 신용장대금의 지급책임이 없음을 확인하고 소외 1 주식회사의 사기적인 물품선적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위 재판소는 1999. 4. 14. 소외 1 주식회사와 잘텍스와의 매매계약은 취소되며 소외 1 주식회사의 부당한 판매행위와 위조된 서류들로 인하여 개설된 이 사건 신용장에 기한 청구를 무효화하는 판결을 하였다.

4) 小結

위 주요판시 사항에 대하여 판결요지의 핵심적인 내용을 살펴볼 수 있고 위조된 서류들로 인하여 개설된 이 사건 신용장에 기한 청구를 무효화하는 원심 판단의 요지는 신용장통일규칙상 인수의 개념 및 제14조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특히 피고가 원고로부터 신용장의 매입 사실을 통보받고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이를 인수한 후 대금의 지급을 약속함으로써 원고에 대한 항변권을 포기하였고 또 그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에게 신의칙상 대금지급의 의무가 있다고 하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위 사유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 대한 항변권을 모두 포기하였다거나 피고에게 신의칙상의 대금지급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는바, 위와 같은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 주장과 같은 신용장과 국제거래관행에 관한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 상고를 기각한 판결로 국제거래무역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2) 非書類的 條件의 有效性 適用(대판 2002. 5. 28. 선고, 2000 다 50299)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신용장에 부가된 비서류적 조건의 유효성 문제로 “신용장의 본질에 비추어 바람직하지 않기는 하지만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라고 판시한 내용이다. 일부 신용장의 경우, 서류를 요구하지 않는 조건이 포함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비서류적 조건(non-documentary conditions)이라 한다.²³⁾

23) UCP 500 제13조 c항은 “신용장이 그와 일치하게 제시되어야 할 서류에 대한 언급 없이 조건만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은행은 그러한 조건이 언급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이를 무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UCC 제5-108조 (g)항도 동일한 취지를 규정하고 있다. 원래 신용장거래는 서류에 의한 거래라는 기본원칙에 충실하여야 하나 서류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않는 조건에 대하여 이를 확인할 수 없는 은행의 부담을 덜기 위한 것이다.

예컨대 “船齡이 10년 미만인 선박에 선적할 것”, “적법하게 선임된 중재인”에 의한 중재판정 등은 비서류적 조건으로서 은행은 이를 무시한다. 그러나 위 참조 대법원 판결에서 “상품이 정상적인 상태임을 확인하는 신용장 개설의뢰인측의 웡청람(Wong)과 흥웨민(Hung)이 작성하고 서명한 검사증명서 원본”을 요구한 사건에서 “서명의 일치부분은 첨부서류 이외에 개설은행에 의뢰하여 그 서명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기 전에는 충족 여부를 판별할 수 없는 비서류적 조건에 해당하나, 신용장이 개설된 경위 및 비서류적 조건을 삽입할 필요성, 비서류적 조건의 내용, 수익자가 그 비서류적 조건을 응낙하였는지 여부, 그 조건의 성취에 관하여 매입자가 관여할 수 있는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신용장에 부가된 이와 같은 비서류적 조건은 신용장의 본질에 비추어 바람직하지 않기는 하지만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다.²⁴⁾

(3) 嚴格一致原則의 適用(대판 2004. 6. 11. 선고, 2003 다 63883)

서류에 의한 거래와 엄격일치의 원칙은 신용장의 유효기간, 제출된 서류와 신용장조건의 문면상의 일치여부,²⁵⁾ 어음금액·송장금액·신용장금액의 상호 일치여부, 상품의 명세·단가 및 수량 등의 기재의 일치여부(description of goods on invoice differs from that in the credit), 분할선적(instalment shipment)·환적(transshipment)의 경우 신용장조건과 일치여부, 각종 서류간의 상호일치 여부(document inconsistent with each other), 보험서류의 종류 및 담보조건과 신용장조건의 일치여부, 기타 신용장 조건과의 일치여부가 주로 문제된다.²⁶⁾ 엄격일치의 원인은 매매목적물의 진정성에 대한 보장을 선적서류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매수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가 신용장에 제시한 조건과 일치하는 서류에 대하여만 지급하게 하려는 것으로서 본래 매수인을 보호하기 위한 원칙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은 은행의 調査義務를 형식적인 서류심사에만 국한시킴으로써 당사자 간의 실질적인 분쟁으로부터 은행을 보호하는 원칙으로 변질되었다. 이와 관련, 우리 대법원의 태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신용장 첨부서류가 신용장조건과 문언대로 엄격하게 합치하여야 한다는 뜻은 자구에 약간의 차이가 있더라도 은행이 상당한 주의(reasonable care)를 기울이면 그 차이가 경미한 것으로서, 문언의 의미에 차이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또 신용장조건을 전혀 해하는 것이 아님을 문면상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신용장조건과 합치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 판단기준은 구체적인 경우에 신용장조건과의 차이가 국제적 표준은행거

24) 同旨, 대판 2002. 7. 26. 선고, 2000 다 51414; 同旨, 대판 2000. 5. 30. 선고, 98 다 47443; 同旨, 2000. 6. 9. 선고, 98 다 35037; 同旨, 2000. 11. 24. 선고, 2000 다 12983 참조.

25) Beyene v. Irving Trust Co., 596 F. Supp. 438 (S.D.N.Y. 1984) 사건 참조, 이 사건 법원은 화물도착통지처(notify party) Mahammed Sofan을 Mahammed Soran으로 기재한 선하증권을 신용장조건과 불일치하는 서류로 판단한 바 있다.

26) 銀行이 주로 지급을 거절하는 사유로는 late shipment, late presentation, partial shipment, short shipment, foul bill of lading 등이다.

래관습²⁷⁾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다.²⁸⁾ 이는 엄격일치의 원칙을 상당히 완화하여 해석하고 있으며 수정엄격일치의 원칙 또는 상당일치의 원칙(doctrine of substantial compliance)으로 볼 수 있다.²⁹⁾ 이와 같이 신용상의 문언은 보편적이고 객관적이며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³⁰⁾ 이처럼 제시된 서류와 신용장조건과의 사이에 불일치가 있어도 그 불일치가 아주 사소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하여 신용장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고 하여야 하며 그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대륙법상의信義則과도 일치한다.

3. Injunction 適用事例

여기에서는 지급금지명령의 적용법리를 규명하기 위해서 지급금지명령이 허용된 사례와 허용되지 않는 사례를 구분하여 Injunction의 적용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1) 支給禁止命令이 許容된 事例

信用狀去來에서 獨立抽象性 原則은 판례를 통하여 비교적 엄격히 고수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신용장의 효용성을 근거로 독립적인 지급의무만을 고수한 결과, 수익자의 사기행위로 인한 발행은행 및 발행의뢰인의 손해에 대하여는 소홀히 한 점이 있다. 아래 사건의 경우는 지급금지명령을 허용한 사례이다.

1) Establishment Esetka International Anstalt v. Central Bank of Nigeria(1974) 사건

① 事件 概要

이 사건은 1974년 12월 나이지리아 국방성이 시멘트를 톤당 US\$59.90 CIF Lagos조건으로 24만톤을 주문하고 나이지리아 중앙은행에서 1975년 3월 18일 신용장을 발행하였다. 라고스항은 혼잡하여 시멘트 적재선박이 적기에 입항하지 못하자 상당량의 시멘트가 손상되었을 뿐만 아니라 거액의 체선료를 부담하여야 했다. 매도인인 수익자는 이를 이용하여 선적하지도 않은 시멘트를 선적한 것으로 허위의 선화증권으로 대금을 대부분 지급받았

27) 2002년 10월 ICC 은행위원회에 의하여 제정된 화환신용장의 서류심사를 위한 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Practice (ISBP)를 말한다.

28) 대판 2002. 6. 28. 선고, 2000 다 63691; 대판 2003. 11. 14. 선고, 2002 다 7770 참조.

29) 대판 1985. 5. 28. 선고, 84 다카 696·697: 신용장거래의 성질과 은행의 서류점검의무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신용장통일규칙이 규정한 합치(accordance) 및 일치(correspondence)의 각 개념의 의미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는 자구 하나도 틀리지 않게 완전히 일치하여야 한다는 뜻이 아니며, 자구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은행이 상당한 주의(reasonable care)를 기울일 경우 그 차이가 경미한 것으로서 문언의 의미에 차이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신용장조건을 전혀 해하는 것이 아님을 문면상 알아차릴 수 있는 때에는 그 서류와 신용장이 합치 또는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30) 대판 1989. 3. 14. 선고, 89 다카 2968 참조.

다. 수화인은 상품이 선적된 것을 추정되는 선박이 약정된 시멘트를 적재하기 위해 문제의 항구에 입항하지 않았던 사실을 입증하였다. 이에 따라 수화인은 나머지 금액의 지급을 거절하자 송화인은 영국법원에 제소하였다.

② 判示 內容

매수인은 사기행위를 입증할 수 있을 경우에 한하여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는 서류를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지급금지명령을 획득할 수 있으며, “근거 없는 사기주장은 허용될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다.³¹⁾ 이는 법원이 금지명령을 발행하여 정당한 조건의 이행을 방해해서는 아니 되지만, 절대적인 규칙은 아니며 사기적인 거래인 경우 등 상황에 따라서는 금지명령을 허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다.

2) *Sztejn v. J. Henry Schroder Banking Corp*(1941)사건

① 事件 概要

미국의 수입업자인 *Sztejn*은 인도의 수출업자 *Transea Traders Ltd.*와 1941년 1월 7일 剛毛(bristle)의 賣買契約을 체결하고 대금지급을 위해 *Henry Schroder Banking Corporation*을 통하여 취소불능신용장을 발행해 주었다. 그러나 수출업자인 *Transea*는 契約條件과는 달리 암소털과 쓰레기를 船積하여 서류상으로는 信用狀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인도에 소재하는 *The Chartered Bank*에게 추심의뢰하였으나 이러한 서류가 발행은행인 *Schroder*에게 제시되자 수입업자인 *Sztejn*은 선적서류가 실제로 선적된 상품을 나타내지 않는 허위서류라는 事由로 法院에 신용장과 환어음의 無效宣言과 발행은행의 지급을 禁止하는 지급금지명령(injunction)을 신청하는 소송을 제기 하였다. 이에 대해 매도인측의 추심의뢰은행인 *The Chartered Bank*는 “제시된 제반서류들은 외관상 신용장이 요구하는 條件에 부합하여 信用狀 去來는 書類上의 一致與否를 근거로 判斷하여야 한다.”라고 抗辯하였다.

② 判示 內容

이에 대해 法院은 “은행이 자신 앞으로 발행된 어음을 지급하기에 앞서 매도인의 요청에 따라 서류의 진위를 조사한다든가 선적된 상품의 품질에 관한 매도인과 매수인간의 분쟁에 관여함으로써 당사자간의 상거래에 개입하게 됨은 가장 불행한 일이다. 당사자들이 은행으로 하여금 이와 같은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신용장에 그러한 규정을 두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은 형식에 있어 올바르게 갖춰진 어음의 지급을 연기하도록 은행에게 허용하거나 또는 이를 요구해서도 아니 될 것이다.”라는 의견을 개진하면서 그러나 예외사항으로서 “支給을 위하여 환어음과 선적서류가 발행은행에 제시되기 전에 매도인의 사기사실이 銀行에 통지되었을 경우, 신용장 발행은행의 의무에 관한 독립성

31) H.C, Gutteridge and M. Megrah, op.cit., p.160. 판례에 의하면, 매수인은 위조 또는 사기의 서류에 대한 명백한 증거로써 은행의 지급금지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은행은 그러한 서류가 제시되는 경우에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의 원칙이 파렴치한 매도인을 보호하는데까지 확대 적용될 수 없다.(the principle of the independence of the bank's obligation under the letter of credit should not be extended to protect to protect the unscrupulous seller...)”라고 판시한 바 있다.

이 사건의 판결은 결국 독립추상성의 예외를 폭넓게 인정하여 신용장의 독립추상성을 배제하게 된 “사기의 원칙”(fraud rule)의 확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미국의 입법에도 큰 영향을 미쳐 독립추상성의 예외규정인 UCC 5-114(2)(b)에 성문화하게 되었다.³²⁾

(2) 支給禁止命令이 許容되지 않은 事例

1) Howe Richardson Scale Co. Ltd. v. Dolimex Cekop and National Westminster Bank (1978) 사건

① 事件 概要

영국의 매도인이 폴란드의 매수인에게 건설중장비를 판매하기로 하여 매도인의 의무이행을 위하여 보증은행으로부터 25,000파운드 한도의 이행보증서(performance bond)를 발급받아 매수인에게 제공하고 대금지급을 위해 신용장이 발행되었다. 매매대금은 지급되었으나 매도인의 수차례 요청에도 불구하고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선적지시를 하지 아니하였다. 그리하여 매도인은 남은 물품을 선적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약정된 인도기일을 지킬 수 없게 되었다. 그러자 매수인은 이행보증서상의 청구를 하였고, 매도인은 지급금지명령을 법원에 신청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하면서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② 判示 內容

은행의 의무는 특정계약에 따라 이행하도록 요구되어 있는 것을 이행하는 것이고, 그러한 의무는 매도인과 매수인간의 매매계약상의 의무이행이 충분하였는가 여부에 관한 분쟁의 해결여하에 좌우되지 아니한다. 은행은 단지 지급의무를 가져오는 상황이 발생되었는가 아닌가를 확인할 뿐이다. 따라서 保證에 따라 은행에 지급을 요구하는 매수인측의 명백한 권리에 대하여 법원이 개입하는 것은 부당하다. 왜냐하면 그럴 경우 은행에게 매매계약상의 매도인의 의무가 적시에 이행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조사할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2) Discount Records Ltd. v. Barclay's Ltd. & Another(1975)사건

① 事件 概要

매수인인 원고는 레코드와 카셋트를 프랑스회사와 수입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은행에게

32) Michael Stern, "The Independence Rule in Standby Letters of Credit", *University of Chicago Law Review* Vol. 53. 1., 1985., pp. 226~229.

취소불능의 확인신용장을 발행의뢰하였다. 그 후 도착한 화물은 잡물(빈상자, 쓰레기 등)로 가득차 있었다. 원고는 피고은행에 대하여 어음의 지급을 금지하도록 Injunction을 신청하였으나 이를 기각하고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② 判示 內容

중대한 사유가 없는 한, 국제금융거래에서의 취소불능신용장 개입은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신용장거래에 대한 법원의 빈번한 간섭은 신용장 자체의 신용도를 손상시키게 되기 때문이다.”라고 판시하여 독립추상성을 엄격히 준수하였다. 이 사건의 경우, 지급금지명이 배제된 사유는 제3의 확인은행이 환어음과 선적서류를 매입하여 피고은행에 제시한 것으로 제3의 확인은행이 선의의 정당한 소지인으로 개입되어 있기 때문이다.

(3) 判例上 判斷基準

신용장 거래는 書類에 의한 去來(deals with documents), 嚴密一致의 原則(the doctrine of strict compliance), 獨立抽象性 原則(principles of independence and abstraction)이 적용된다. 은행은 매매계약조건과는 별개로 신용장 조건에 엄밀히 일치하는지 서류만을 근거(on the basis of documents alone)로 하여 심사하고 지급여부를 결정한다. 詐欺原則(fraud rule or fraud exception)은 재판기관이 사기거래에 개입할 수익자의 비도덕성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실수에 의한 착오인 경우나 계약의 실질이행이 달성된 경우도 독립추상성의 예외를 인정하지 않게 된다. 이와 같이 信用狀去來를 악용하려는 당사자들의 사기 또는 기만의 행위가 있을 때에 독립추상성의 例外로써 은행의 지급을 금지시키는 예외조치가 詐欺原則으로 판례와 입법을 통해 인정되어 왔음을 살펴보았다. 아래에서는 구체적 판단기준으로 사기에 대한 면책과 지급정지조건을 제시한 인도의 판례를 검토하였다.

1) 詐欺에 대한 免責

서류의 진정성과 관련, 인도의 최고법원은 UCP 400 Article 17의 규정을 인용하여 은행은 서류의 진정성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하므로 “서류의 文面上 사기의 사실이 명백히 들어나 있지 아니하는 한 서류의 瑕疵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³³⁾ 나아가 “서류가 문면상 일치하더라도 詐欺나 回復할 수 없는 損害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은행의 지급의무에서 예외가 인정된다”라고 판단하고 다음과 같은 의

33) UCP 400 Article 17과 UCP 500 Article 15에서는 “서류의 효력에 대한 면책”부분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Banks assume no liability or responsibility for the form, sufficiency, accuracy, genuineness, falsification or legal effect of any document(s), or for the general and/or particular conditions stipulated in the document(s) or superimposed thereon; nor do they assume any liability or responsibility for the description, quantity, weight, quality, condition, packing, delivery, value or existence of the goods represented by any document(s), or standing of the consignors, the forwarders, the consignees or the insurers of the goods, or any other person whomsoever.”

견을 제시하고 있다. 발행의뢰인/원고가 위의 2가지 예외에 대하여 추정적으로 확정할 수 있다면, 인도법의 준거규정에 의하여 임시적 지급정지를 발령받을 수 있다.³⁴⁾

그러나 은행보증(bank guarantee) 또는 신용장은 매도인/수익자와 매수인/발행의뢰인 사이에 체결된 주 계약과는 독립적이다. 이는 UCP 400 Article 3에서 명백히 하고 있다.³⁵⁾

취소불능보증 또는 신용장에서 매수인/발행의뢰인은 매도인/수익자가 계약위반을 하였다는 사실을 근거로 은행에 대하여 지급정지를 수락하도록 할 수 없다. 은행의 입지에서 수익자가 은행보증 또는 신용장의 조건에 추정적으로 일치하는 서류를 제시하였다면 현금화 요구를 수락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발행은행은 단순히 매수인/발행의뢰인이 계약위반 사실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사실만으로는 지급을 거절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발행은행은 서류가 제시되면 이를 통례적인 주의를 다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2) 詐欺에 대한 支給停止條件

인도의 최고법원은 발행은행에 대하여 매수인/발행의뢰인이 지급정지를 수락하도록 하려면 그 은행이 사기의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견지하고 있다. 또한 법원은 은행에 확정적 사기의 사실이 통보되지 않은 경우, 이들 계약상의 분쟁은 소송 또는 중재의 방식에 의하여 수출입계약당사자간에 직접 해결하여야 할 사항에 속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하고 있다. 이는 은행이 사기의 의심 또는 이와 유사한 이유에 의하여 지급거절이 허용된다면 국제상거래에서 은행의 신용 및 유용성은 훼손되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인도의 최고 법원은 영국법원 판결을 인용하여 수익자가 사기의 주범이라면 신용장의 독립추상성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이에 支給停止(Unpaid)명령을 발할 수 있다는 의견을 견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기의 사실에 대한 명백한 증거가 있어야 하고 또한 은행이 이를 확실히 인지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엄격한 사기증거의 기준은 영국법원이 택하고 있는 입장으로서 영국 법률의 영향을 받고 있는 인도의 경우에도 같은 맥락의 법원판례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분석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인도의 법원은 다음의 상황에 의한 사기가 존재하는 것으로 법원에 청원하였다면 은행으로 하여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었

34) Civil Procedure Code, Order 7 Rule 11 - Cause of action - Fraud - Non-supply of goods - Suit for recovery based on the allegation of fraud filed by the bank -No allegation in the plaint of presentation of any forged or fraudulent document to the bank - Mere allegation of fraud because of non-supply of goods will not amount cause of action to get over an objection under Order 7 Rule 11 CPC - Non-supply of goods may be because of variety of reasons, but it will not itself amount to fraud - No other allegation in the plaint that the goods were not deliberately shipped or an attempt was made to pass off rubbish as the goods order for - Plaint geld liable to be rejected under Order 7 Rule 11 for non-disclosure of cause of action - Letter of credit was without recourse to the invoice value(Paras 15, 17, 20, 21 and 25)

35) UCP 400 Article 3 : Credits, by their nature, are separate transactions from the sales or other contracts(s) on which they may be based and banks are in no way concerned with or bunt by such contracts(s), even if any reference whatsoever to such contract is included in the credit.

을 것이라는 의견을 견지하고 있다.³⁶⁾ 이는 다음에 제시하는 사기의 유형을 검토함으로써 Fraud Rule의 구체적 적용을 확인할 수 있다.

IV. 詐欺의 類型

신용장거래와 관련하여 Fraud Rule이 적용되는 사기거래의 유형은 크게 서류상의 사기와 거래상의 사기로 나누어 볼 수 있다.³⁷⁾ 전자는 신용장거래에 관련된 각종 서류가 위조된 경우로 그 자체로서 사기적인 거래라 할 수 있고 후자는 거래자체의 실질적인 내용이 사기적인 경우를 말한다. 서류위조형 사기거래의 대표적인 사건은 거래에 관련된 선적, 운송 등 모든 서류가 위조된 경우이다.³⁸⁾ 그리고 거래상의 사기유형은 사실관계가 대표적인 경우에 해당한다.

1. 위·변조의 합정조항이 있는 신용장의 사용

(1) 수입상의 T/T결제 피해

S사는 2000년 4월 e메일을 통해 말레이시아 소재 CPU공급업체라고 소개한 N사와 T/T 조건으로 수입계약을 체결, 수입대금 6만 달러를 4월중 송금했다. 그러나 도착예정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선적서류 등이 도착하지 않자 N사에게 물품이행을 요청했으나 물품선적 이행은 물론 대금 반환 요청에도 응하지 않았다. 이후 N사로부터 최근 거래처를 런던으로 옮긴다는 통보만 받고 연락이 두절됐다. S사는 N사와 e메일을 이용, 가격 및 계약 등의 협상을 추진했으나, 연락처는 오직 휴대폰 번호만 사용하고 있었다. 회사 전화번호 등 기본적인 연락수단도 없이 거래한 사기유형으로 상대 기업에 대한 사전 情報 入手의 중요성을 간과한 부분이 있다. 전자무역은 거래상대방의 匿名이 보장되기 때문에 거래제의를 받을 경우 이에 대한 구체적인 調査는 필수다. 상대방의 身元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2) L/C방식 선적서류 하자

D사는 2000년 12월초 이집트 F사로부터 e메일로 4만 달러 상당의 여성용 스커트 오더

36) India, 2002. 4 LRI 204 (Sup. Ct. of India) ①상품이 단순히 품질이 열악하다는 이유뿐만 아니라 가치 없는 쓰레기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②서류가 사기를 유발한 수익자와 동일한 입지에 있는 자의 수중에 있는 경우 ③은행에 환어음 및 지급을 위한 서류가 제시되기 전에 사기의 통지가 주어졌을 경우 ④은행이 타당 사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판결을 기다리는 동안 지급을 이행하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 등이다.

37) 미국 통일상법전 제5장 신용장편 109조(Revised UCC Article 5 section 5-109)에서도 그 표제를 "Fraud and Forgery"로 명기하고 있다.

38) 대판 1997.8.29. 선고 96다43713 참조.

를 L/C지불조건으로 받아 물품을 선적하고 대금결제를 기다렸다. 그러나 거래은행으로부터 선적서류상의 하자로 인해 L/C개설은행으로부터 선적서류가 되돌아왔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에 D사가 조사해 본 결과 바이어가 L/C개설 후 자금줄이 막히자 이를 구실삼아 고의로 대금지불을 거절한 사례로 D사는 인수거부 상품이 중동시장에 맞게 생산된 것이라 재수입할 수도 없어서 결국 혈값에 현지에서 처분할 수밖에 없었던 사례이다. 신용장 거래 관여 은행이 선적서류의 위조 사실을 알았거나 그와 같이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는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시점은 최종적으로 매입은행의 경우에는 매입 당시이고, 개설은행의 경우에는 상환시라고 할 수 있다. 수출상으로부터 구비서류를 받은 매입은행의 경우 심사시 유의사항으로는 제시된 서류중 신용장 조건변경 관련서류가 빠짐없이 제시되어 있는가의 여부(악의의 수출상이 자신에게 불리한 조건변경서를 제시하지 않는 사례 예방), 신용장상에 상품의 등급표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업송장상에 상품의 등급을 “second grade” 등으로 표시한 경우, 신용장상의 상품단위를 per, doz, case 등으로 표시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송장 및 환어음에 more or less 조건을 적용하였는지의 여부, 위조 B/L 적발을 위하여 각 선박회사의 서명감과의 일치여부를 대조 확인할 것 등이다.

2. 부수적인 서류의 위조와 변조

(1) 부도수표로 상품 대금결제 사기 유형

2003년 초에 모조장신구를 취급하는 한국의 H사는 영국의 대형백화점에 납품하는 중간도매상(C사)의 무역거래 방식은 상품선적이 완료되면 수표로 결제하겠다는 것이었다. H사가 L/C나 T/T 방식을 고집했지만 직접 수입을 해본 적이 없다며 수표결제만 주장하면서 분쟁이 발생할 때에는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를 따른다는 중재조항을 계약서에 삽입키로 합의했다. 4월경에 선적은 무사히 이루어졌고 C사는 3만 달러짜리 개인수표를 보내오면서 2만 달러 규모의 추가 주문을 해 왔다. 1차로 받은 수표를 거래은행에 매각하고 보름 뒤 두 번째 주문 분의 선적을 완료했다. 수표를 매입하여 외국은행에 추심을 의뢰했던 거래은행이 한 달 뒤 부도수표로 판명 났다며 3만 달러를 즉각 상환해내라는 것이다. 결국 H사는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요청하게 되었으나 대금회수가 이루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이러한 부도수표 사기 예방책으로는 선진국 바이어라고 해서 사전 조사 없이 개인수표를 받아들이면 안되며 수표거래는 그 동안 많은 실적이 있는 자사의 거래선인 경우에 한하여 그리고 만일 사고 발생시 큰 손실을 입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사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

(2) 수표결제 피해

M사는 2000년 9월 나이지리아 수입상으로부터 주문제의를 받음과 동시에 선급금으로

물품대금의 일부를 수표로 받았다. 일단 부도여부를 확인차 받은 수표 중 일부를 추심으로 돌려다. 수입상이 보낸 수표는 발행처가 미국이라 추심을 돌려 입금이 확인되면 선적하겠다는 생각이었으나 여러 경로를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는 동 거래를 취소하였다. 즉, 미국에서는 금융기관이 수표를 관리할 때 육안으로 판별이 어려운 것은 바로 결제하고, 앞면이 위조인 경우 1년간, 뒷면이 위조일 경우 3년간 유효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기간 중 만약 결제자가 서명한 것이 아니거나 발행한 것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면 회수에 들어간다. 이러한 경우 미국과 한국은행에서 모두 대금을 입금했더라도 미국에서 위조가 판명되면 회수에 들어가며, 관례상 한국의 은행들도 이 요구에 응해 자금을 회수하게 된다. 따라서 대금을 받은 업체가 안심하고 거래를 종료시켰더라도 나중에 대금회수청구가 들어오면 수출업체는 대금을 다시 송금해야 하는 것이다. 국내 수출상은 거래상대방이 수표로 결제를 요구한다거나 사후송금을 요구하는 경우, 수입상은 해외공급자가 선지급을 요구하는 경우 사기의 가능성이 높다. 해외수입상은 대금을 지불치 않고 물품이나 샘플을 미리 인수하기 때문에 국내 수출상으로서의 대금회수가 불투명해질 수밖에 없다. 개설은행에 확인을 한다거나 신용조사를 철저히 함으로써 그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3. 실제로 효과가 있는 신용장의 사용

(1) 내륙운송 B/L누락

2000년 9월 N사는 e메일을 통해 모스크바의 바이어로부터 20만달러 상당의 스파텍스 주문을 받았다. L/C거래만을 해오던 N사는 비수기에 따른 재고처분을 위해 바이어가 제시한 COD결제방식(상품현지 도착 후 선적서류 인도와 동시에 T/T송금)을 수락, 함부르크항으로 선적하고 B/L사본을 바이어에게 송부, 대금결제를 요청했다. 그러나 바이어는 현지 통관절차상 필요하다며 내륙운송용 복합운송 B/L의 추가송부를 요청했다. 이후 N사는 이 바이어가 인도와 중동계 바이어로서 계약금액을 할인하기 위해 상습적으로 이 수법을 사용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 결국 N사는 통관에 따른 모든 절차를 바이어측이 알아서 하겠다는 조건으로 당초 계약금액의 30%를 할인하는 데 동의했다. 국내 중소기업의 경우 거래실적에 집착하여 이러한 사기유형에 쉽게 넘어갈 수 있다. 특히 거래조건이 양호하거나 자사상품에 대한 해외수요가 비수기일 때, 판매가 부진할 경우 이러한 사기수법에 이용당할 수 있다.

(2) 선적서류 위조

2001년 4월 베트남 소재 식품원료공급 업체인 H사는 국내 7개 수입업체에 40만달러 상당, 30여 컨테이너 분량의 식품원료를 공급하면서 선박회사가 발행하는 선하증권(B/L)

을 신용장조건에 맞게 위조해 현지 베트남소재 은행을 통해 수출대금을 인출하고 실제로는 계약내용에 비해 품질이 훨씬 떨어지는 제품을 선적하는 수법으로 국내 업체에 피해를 입힌 유형이다. 우리 대법원의 태도는 선적서류가 위조된 경우, 개설은행이 상환의무를 이행할 당시 그 서류가 위조된 문서임을 알고 있었거나 위조된 문서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고, 또한 매입은행도 위조행위의 당사자로서 관련이 되어 있거나 매입³⁹⁾ 당시 서류가 위조된 문서임을 알고 있었거나 또는 위조된 문서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을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개설은행은 신용장대금의 상환을 거절함이 마땅하고, 매입은행도 개설은행에게 신용장대금의 상환을 구할 권리가 없으며 설사 개설은행이 매입은행에게 신용장대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개설의뢰인 또는 개설의뢰인의 보증인에 대하여 신용장대금의 결제를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⁴⁰⁾

V. 對處方案

신용장거래는 法律에 근거하기에 앞서 去來慣習에서 유래되어 왔다. 이러한 신용장의 특수성을 확인하고 법적효과를 이해하기 위하여 신용장거래 관행의 변화과정을 살펴보고 특히 학설과 판례를 중심으로 신용장통일규칙의 규정적용을 비교·검토해 보았다. 국제적 신용장 거래의 사기사건에 대한 예방책은 國際訴訟에 앞서 심사절차의 신중화로 僞·變造의 방지에 있으며 상대 기업에 대한 사전 정보 입수 등 身元確認이 중요한 몫으로 차지하고 있다. 이를 세분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信用調查의 擴大

신용장거래의 경우, 거래 이전에 바이어에 대한 情報를 최대한 수집해야만 한다. 은행으로부터 네고가 끝나면 상황이 끝난 것으로 판단하기 쉬우나 그렇지 않다. 신용장 발행을 요청받은 개설의뢰인은 수익자와의 거래에서 사기행위가 개입된 여지가 있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수익자에 대한 신용도조사가 필요하다. 이는 계약체결시 별도의 직·간접적인 확인과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상대방의 사기행위를 적발할 수 있도록 노력

39) 신용장통일규칙상 매입의 정의와 그 시기에 관하여, 1983년 개정 제4차 신용장통일 규칙에는 매입에 관한 정의규정이 없었으나 1993년에 개정된 제5차 신용장통일규칙 제10조 b항 ii호는 “매입(negotiation)이라고 함은 매입을 授權받은 은행이 환어음 및 서류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giving of value)을 의미한다.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단순히 서류만을 점검하는 것은 매입이 아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40) 대판 1993.12.24. 선고 93다15632 참조.

해야 한다. 개설은행은 개설의뢰인과 수익자간에 실제거래가 성사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사전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선적 전 검사를 적극 활용하여 계약조건에 부합토록 미리 파악하여야 한다. 신용장을 수령하면 가격과 선적기일, 만료일 등의 점검 외에도 신용장의 각 조항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선 不一致書類拒絕의 적시성과 詐欺例外의 2가지 측면에서 신중한 확인과정을 거쳐야 한다. 불일치서류거절의 적시성과 관련하여 은행은 서류의 거래원칙에 따라서 제시된 서류가 신용장의 조건에 文面上 일치하는 경우에만 지급 등의 확약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문면상 일치 여부의 판단은 서류만을 근거로 이루어진다는데 문제가 있다. 이를 감안, 거래 상대방에 대한 信用調査는 철저하고 정확히 조사해야 될 필요가 있다. 거래 규모가 작은 경우에는 KOTRA 해외무역관을 통해, 큰 경우에는 신용조사기관이나 수출보험공사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조사해야 한다. 조사관 확충을 위해서는 중재인 산하에 자격기본법에 의한 보조요원을 양성하여 활성화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2. 嚴格한 指針의 適用

신용장은 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매도인이 이행하여야 할 사항을 特定하는 것으로 매도인이 정확히 지급받기 위해서는 엄격일치의 원칙에 따라 신용장조건을 엄격히 준수하여야 한다.⁴¹⁾ 전자문서는 반송 없이 처분할 수 있으나 종이문서는 반송해야 한다. 그러므로 전자문서의 경우는 반송 유무가 지급거절의 조건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 UCP500과의 차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전자기록의 원본과 사본에 대하여 eUCP 신용장 하에서 제시되는 전자기록은 신용장상에 한 통 또는 그 이상의 원본과 사본을 요구하더라도 한 통만 제시하여도 신용장 조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된다. 이는 전자기록의 특성을 감안한 전자기록의 원사본과 제시 통수에 관한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나아가 적시성과 관련하여 국제상업사회의 요구에 따르면 UCP 400 Article 16 (c)에서의 적정한 '통례적 시간'과 UCP 500 Article 13 (b)에서의 7은행영업일 이내의 적정한 '통례적 시간'을 규범화하고 있는 것이며 서류의 일치성 심사에서 반드시 준수되어야 하는 중요한 규정이다. 그리고 사기성 사건에서 인도의 법원은 신용장거래에서 사기의 예외에 대하여 엄격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음을 판례를 통하여 확인해 보았다. 서류에서 文面上 詐欺의 사실이 명백하게 나타나 있지 않는 한 은행은 서류의 진정성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기본 원칙을 견지하고 있으며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체결된 계약위반을 근거로 은행에 대하여 지급정지를 명령할 수 없다고 하고 있다. 법원은 은행이 사기의 사실을 인지하지 않았거나 또한 확정적 사기의 사실이 통보되지 않은 경우 이들 계약상의 분쟁은 매매당사자가

41) 대판 1993.12.24, 93다 15632 참조.

직접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지 은행은 이에 관여하지 않아야 한다고 하는 원칙을 준수하고 있다.

3. 國際 情報交流의 增大

신용장이 개설되면 賣渡人의 국가에 있는 통지은행(advising bank)은 일반적으로 개설은행과 거래관계를 갖는 은행(correspondent bank)으로, 이때 매도인은 신용장이 요구하는 조건과 기본계약에서 정한 조건을 비교·검토하여야 한다. 비교 후 만약 조건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면 매수인과의 접촉을 시도하여 물품선적 전에 신용장조건의 변경 또는 수정 신용장의 발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⁴²⁾ 그리고 독립성의 원칙에 대한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에 개설은행이나 확인은행은 판단에 따라 惡意없이 신용장금액을 지급한 때에는 개설의뢰인으로부터 償還받을 수 있다.⁴³⁾ 처음거래나 단기간 거래면 반드시 선진국 은행 또는 우량은행이 支給保證하는 確認 L/C(Confirmed L/C)를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지정은행(Nominated Bank)의 전자기록의 발송은 전자기록에 대한 외관상의 진정성(authenticity)을 점검 완료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개설은행에서도 진정성 확인의무가 있어야 한다. 書類變造에 의한 서류심사기간의 연장은 신용장의 유효기일 연장으로 볼 수 없다. 이에 따라 書類再提示도 신용장의 유효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 규정은 서류변조의 경우에만 적용되고 위조나 서류의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偽造·瑕疵의 경우에는 서류의 재제시를 요구하지 않고 바로 支給 拒絕通知(notice of refusal)를 해야 한다. 이들 규정의 현실성 확보는 다자간 정보교류 및 휴민트(humint, 교포 등 현지인과의 관계를 활용해 얻는 인적정보)를 활용, 향후 전자무역에서 대두될 수 있는 技術的·法律的 문제 등 많은 위협에 대비해야 한다. 정부 차원에서는 관계자에 대한 교육 강화와 무역 사기 신고센터를 확대하는 등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은 물론 선적서류의 DB화 등 통합시스템의 구축을 확장시켜야 한다. 나아가 국제학술회의 등을 통해 수시 자료를 입수하여야 하며 지침위반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에 호소하는 한편 국제상업사회 이슈로 부각시킴으로써 상대국의 변화된 모습을 이끌어 낼 수 있다.

4. 損害保險의 請求

契約書는 細密하게 작성해야 하고 일정기간 保管해야 한다. 代金決濟 후에도 추가적인

42)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 제17조 참조. 청약의 거절에 관한 규정으로 취소불능의 청약이라도 거절의 통지가 청약자에게 도달한 때는 그 효력이 상실된다. Vienna Convention Article 17, An offer, even if it is irrevocable, is terminated when a rejection reaches the offer.

43) 대판 1997.9.5, 97다 17452 참조.

損害發生 부분에 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貿易代金の 결제방식은 送金方式(remittance basis)과 推尋方式(collection basis)이 있는데 실무에서는 추심방식이 널리 사용되며 신용장에 의한 방식이 주로 이용된다.⁴⁴⁾ 무역클레임이나 사기의 경우 대부분의 輸出者는 자신의 입장만 설명하려고 하나 실제로 수출자의 제품에 하자가 상당히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계약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⁴⁵⁾

發行日字(date of issuance)에 관하여 eUCP는 전자기록상 특별한 명시가 있으면 당해 일자가, 명시가 없으면 送信日字를 發行日로 간주한다. 전자선하증권 상에 선적일자나 발송일자가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권의 발행일자가 선적(shipment) 및 발송(dispatch) 일자로 간주되며, 선적일자나 발송일자를 부기(notation)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부기일자가 선적 및 발송일자로 간주된다. 物品이 목적지에 도착하면 매수인은 유통성선하증권을 제시함으로써 운송인으로부터 물품을 인도받는데 물품이 운송(transport) 중에 멸실 또는 훼손될 때에는 매수인은 인도받은 보험서류를 사용하여 발행한 손해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⁴⁶⁾ 향후 기업의 경영상태 등을 감안, 輸出信用保證制度의 활용이나 輸出保險에도 가입해야 한다.

參 考 文 獻

- 朴錫在, “사이버 貿易時代의 新決濟方式에 관한 研究”, 貿易商務研究 제14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00.
- 손태우 외, 국제거래법 용어통일대사전, 도서출판 대명, 2007.
- ICC, “UCP Supplement for Electronic Presentation(eUCP)”, Department of Policy and Business Practices, Document 470/941rev2, 30 August 2001.
- ICC, “eUCP : Supplement to UCP500 for Electronic Presentation”, version 1.0, ICC Pub. S. A., 2002.
- ICC, “UCP500+eUCP”, No.500/2, 2002.
- Michael Stern, “The Independence Rule in Standby Letters of Credit”, *University of Chicago Law Review* Vol. 53. 1., 1985.

44) 1968.12.31 수출보험법이 제정·공포되었으며, 1992.7.7 한국수출보험공사가 설립되어 수출보험업무를 전담하고 있는데 2004.1.1부터 해외 채권추심업무를 개시하고 있다.

45)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 제32조의 (3) 참조. 매도인의 보험의무규정이 없는 경우, 매수인의 보험가입에 필요한 정보제공의무의 규정, Vienna Convention Article 32(3), If the seller is not bound to effect insurance in respect of the carriage of the goods, he must, at the buyer's request, provide him with all available information necessary to enable him to effect such insurance.

46) 대판 1992.2.14, 91다 13571 참조.

<http://www.kita.net>

<http://www.tradecard.com>

<http://www.kotra.co.kr>

<http://www.kcab.or.kr>

<http://www.tradenews.net>

ABSTRACT

How to deal with Fraud Cases in L/C-based Transactions in International trade business

Seon-Mo Nam

A letter of credit transaction of the preexistence have been raising one's head fraud charge problem as a result of abusing the principles of independence and abstraction. Every society has certain rules and conventions which it regards as important and most of people in any society. The paper document means a document in a traditional paper form. The eUCP credit must specify the formats in which electronic records are to be presented.

In these present times, the issuance of documentary credit are performed by the SWIFT(Society for Worldwide Inter bank Financial Telecommunication) system. The eUCP have been written to allow for presentation completely electronically or for a mixture of paper documents and electronic presentation.

Presentation is deemed not to have been made if the Beneficiary's notice is not received. An electronic record that cannot be authenticated is deemed not to have been presented. The e-UCP is the supplement of current existing UCP but is superior to UCP under some circumstances.

The document shall include an electronic record. The place for presentation of electronic records means an electronic address. The current e-UCP is not clear on this matter. We have to note followings in case of presenting the documents electronically and applying the e-UCP. There are three principles in the letter of credit transaction, that is to say, independence and abstraction, document dealing, strict compliance. IN the electronic letter of credit, these principles are called as independence and abstraction, electronic document dealing, strict compliance.

Key Words : The Credit,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commercial documentary credits, Principles of independence and abstraction, Fraud Rule, Injunction, Fraudulent or False